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6월 2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7. 2)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 적정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행정동에 대하여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등포제1동과 신길제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영등포제2동과 영등포제3동을 “영등포동”으로, 도림제1동과 도림제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제1동과 문래제2동을 “문래동”으로 통합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

○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함.

○ 통합동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및 직무보장

○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욱)

○ 우리 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써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전산화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제4조 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 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였는지와 통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48 호

제출년월일 : 2008.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적정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동에 대하여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등포제1동과 신길제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영등포제2동과 영등포제3동을 『영등포동』으로 도림제1동과 도림제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제1동과 문래제2동을 『문래동』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
나.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함.
다.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통합동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및 직무보장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소요예산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별도 확보 및 집행
다 협 의 : 행정지원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결과
(1) 예고기간 : 2008. 5. 28 ~ 6. 17(20일간)
(2) 의견접수
- 신길2동 주민자치위원장 조도승 외 1,689명
- 문래2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주범
- 도림1동 노인회장 이석기 외 24명
- **신길7동 고현순**

(3) 조치내용 : 검토결과 미반영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과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남은임기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남은임기 이내의 기간동안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동주민센터의 청사 등 일정지역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일정기간동안 관리인력을 배치한다.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공원길23 (영등포동 592-70)		영등포동 중 영등포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길동 101번지 19호를 기점으로 도신로에 연하는 신길동 221번지54호,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190번지47호에서 신길동 188번지 420호와 소방도로를 따라 신길동 35번지 이남지역
	영등포동	중마루길 28 (영등포동 2가 222-2)	영등포동 1가 영등포동 2가 영등포동 3가 영등포동 4가 영등포동 5가 영등포동 6가 영등포동 7가 영등포동 8가	영등포동 중 경인로 이남지역 중 경부철도 이북지역으로 영등포동 414번지24호 소방도로 이동지역
	여의동	여의길 3 (여의도동 53-22)	여의도동	
	당산제1동	장수길 42 (당산동3가 250)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제2동	당산길 16 (당산동6가 305-4)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당산동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도림동	장미꽃길 50-1 (도림동222-7)	도림동	
	문래동	문래역1길39 (문래동3가 55-16)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양평제1동	양남공원길14 (양평동1가 211-1)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중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중심으로 한 남쪽지역으로 양평동3가 69번지를 기점으로하여 소방도로를 따라 남쪽 양평동3가 1번지1호를 종점으로 한 북서쪽 지역
	양평제2동	느티나무길8-1 (양평동4가 172-1)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양화동	양평동3가 지역 중 양평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길제1동	신동1길1-13 (신길동 465-2)		신길동100번지21호에서 도신로 신길동159번지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동202번지240호,144번지190호, 460번지3호를 연하는 이동지역과 경인로 이북지역 중 신길동 70번지10호에서 신길동 1번지4호 북서지역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신길제3동	감나무4길 21-1 (신길동 268-4)		신길동 220번지35호를 기점으로 도신로에 연하는 신길동 376번지 가로공원길 동쪽으로 신길동 355번지209호에서 도림로 신길동 342번지89호를 경유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253번지298호에서 신길로를 따라 기점에 이르는 지역
	신길제4동	신남길 3 (신길동 209-102)		신길동 221번지44호를 기점으로 하여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 239번지1호 동북지역의 신길동 4934번지를 경유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159번지 58호 도신로에 연하여 기점까지의 지역
	신길제5동	도림로 149-3 (신길동 422)		신길동337번지390호를 기점으로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 440번지 57호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410번지141호에서 북쪽으로 신길동405번지37호,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379번지5호, 가마산길 신길동355번지545호 도림로 신길동342번지134호,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329번지 29호 이면도로에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구 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신길제6동	대방천길 94 (신길동 3741-11)		신길동 3514번지1호를 기점으로 신길로를 따라 시흥대로 만나는 지점에서 대방로를 따라 신길동 623번지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2772번지1호, 이북방향으로 신길동 243번지 58호에서 서쪽으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길제7동	매낙골길 7-4 (신길동 897-3)		신길동 중 영등포본동장 , 신길제1,3,4,5,6동장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대림제1동	디지털 단지로 26 (대림동 899-2)		대림동 700번지1호를 기점으로 대림로에 연하는 대림동 989번지 5호, 시흥대로를 연하는 대림동 948번지1호,신길로에 연하는 대림동908번지13호부터 소방도로 대림동906번지108호지역
	대림제2동	대림복지관길 29 (대림동 705)		대림동 709번지를 기점으로 도림로에 연하는 대림동 1053번지 12호, 도림천로를 연하는 대림동 994번지4호, 시흥대로를 연하는 대림동 990번지1호지역
	대림제3동	대림로 66 (대림동 740-4)		대림동 중 대림제 1,2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지역